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7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6-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6-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4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5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6-6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6-7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6-8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2
----------	----------

제출연월일	2016. 1. 0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확대·신설된 사업소의 장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구성 시 당연직위원 확대(안 제2조)

○ (현행)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변경) 본청 실·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함

○ 기타 ⇒ 그 밖의, 자 ⇒ 사람, 인 ⇒ 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2. 11. ~ 12. 3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제2조제4항 후단)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본청 실·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제목 “(결정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사항을 결정한다.”를 “각 호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중전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중전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 위원회 등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제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삭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5조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장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하”를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u>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p>④ <u>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원은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u></p> <p>⑤ <u>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p>제2조(구성) ① <u>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각 1명-----</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본청 실·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u></p> <p>-----</p> <p>④ -----</p> <p>-----</p> <p><u>10명-----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⑤ <u>위촉위원-----</u></p> <p>-----</p>
<p>제3조(결정사항) <u>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u></p> <p>1. ~ 6. (생략)</p> <p>7. <u>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u></p> <p>8. <u>보안업무시행요강제4조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u></p>	<p>제3조(기능) -----<u>각 호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의결한다.</u></p> <p>1. ~ 6. (생략)</p> <p>7. -----<u>위원회</u>-----</p> <p>-----</p> <p><u><삭제></u></p>

현행	개정안
9.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8. ----- -----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 위원회 등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
<p>제4조(회의) 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p> <p>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제4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 -----</p> <p>④ ----- -----</p> <p><삭 제></p> <p><삭 제></p> <p>⑥ -----경우-----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p> <p>② (생략)</p>	<p>제6조(간사) ① ----- -----1명-----</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군정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문별로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하의 거창군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 지역경제·건설, 환경녹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 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p> <p>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원은</p>	<p>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 -----단장 1 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 ----- -----</p> <p>-----2명----- -----</p> <p>② -----</p>

현 행	개 정 안
<p>전원 위촉직으로 하되, 부문별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u>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 ----- -----<u>사람</u>-----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p>	<p>④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군정조정위원회</u>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p>	<p>5. <u>위원회</u>----- -----</p>
<p>6. <u>기타</u>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p>	<p>6. <u>그 밖의</u>----- -----</p>
<p>⑤ ~ ⑥ (생략)</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u>제7조의2(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u> ① (생략)</p>	<p><u>제7조의2(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u> ① (현행과 같음)</p>
<p>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별로 <u>2인</u>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 <u>2명</u>----- -----</p>
<p>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u>제7조의 규정을</u> 준용한다.</p>	<p>③ -----<u>제7조를</u>----- -----</p>
<p><u>제8조(실비변상)</u>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자문단원,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안에서</u>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u>기타</u>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제8조(실비변상)</u> ----- ----- <u>범위에서</u>----- -----<u>그 밖의</u>----- -----</p>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3
----------	----------

제출연월일	2016. 1. 0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함에 따른 본청과 사업소 정원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조정

- 현행 : 598명(본청276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5명, 읍36명, 면136명)
- 조정 : 598명(본청278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3명, 읍36명, 면13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1. 30. ~ 12. 2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6)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0	295 293	14	128	65	63	49 51	37	147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37	292 290	14	100	37	63	47 49	37	147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98	278 276	11	94	33	61	43 45	36	136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6	1		3	3		2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4
----------	----------

제출연월일	2016. 1. 0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조항 변경함(안 제4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내용 반영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작성요령 “주민등록번호란 설명” 삭제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안 제14조)

○ 자 ⇒ 사람

라. 지번 요구 사항을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도록 함(별지 제5호서식)

○ 지번 ⇒ 도로명과 건물번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1. 20. ~ 12.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본문, 같은 항 제3호·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8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p> <p>3. ~ 6. (생 략)</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u>생년월일</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 -----<u>생년월일</u>----- ----- -----</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 략)</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경우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 ~ ④ (생 략)</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생년월일을</u>----- -----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군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u>자로</u>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심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 2. (생략)</p> <p>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u>자</u></p> <p>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u>자</u></p> <p>④ (생략)</p> <p>제1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심의회)의 구성) ① ----- ----- ----- -----<u>사람으로</u>----- ② (현행과 같음) ③ ----- -----<u>사람</u>----- ----- 1. ~ 2. (현행과 같음) 3. ----- -----<u>사람</u>----- 4. ----- -----<u>사람</u>----- 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수당 등) ----- ----- -----<u>범위에서</u>----- -----</p>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제외지역 :</p>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인)</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p> <p>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u>생년월일</u>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u>생년월일</u>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거창군수 귀하				
<p>※ 작성요령</p> <p>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p> <p>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 읍·면(○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 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일자	비 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거창군수 귀하</p> <p>※ 붙임서류 : 증명자료</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p> <p>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5
----------	----------

제출연월일	2016. 1. 0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제2조, 별지 제1호·제7호서식)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 제16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12.07. ~ 12.2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u>」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u>」 제16조의4----- ----- -----</p>
<p>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u>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u>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p> <p>② ~ ⑤ (생략)</p>	<p>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거창군수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뒷쪽란 생략)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④ 전화번호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p>「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거창군수 직인</p>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6
----------	----------

제출연월일	2016. 1. 0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도시사업 중 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제7호)

○ 세계보건기구(WHO) 안전도시 인증 공인 기간 만료('15. 3월)

나.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5조의2)

○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16년도 예산 25,0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2. 23. ~ '16. 1. 1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군민안전보험)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에 가입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이름, 보상범위, 보상 한도액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u>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u> 8.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u><신 설></u></p>	<p>제5조(사업의 범위)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5.----- 6.----- <p><u><삭 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p><u>제5조의2(군민안전보험) ①</u>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u></p> <p><u>②</u> 군수는 보험에 가입한 후 10일 이내에 <u>보험가입 회사이름,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p>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의2(군민안전보험)제1항

: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김 정 욱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7
----------	----------

제출연월일	2016. 1. 0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요금 납부방법 개선, 체납 시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및 감면사항을 정함(안 별표 2, 별표 4)

- 업종별 사용료 20.9%, 구경별 기본요금 15.2% 인상률 반영
-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별표 7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 ~ 3급)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나. 요금 등 납부방식 개선함(안 제32조의2)

-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신설

다. 요금 체납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함(안 제34조)

- (현행) 체납액의 3%, 월할계산 ⇒ (변경) 2%, 일할계산

라. 규제 삭제함

-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서 조항 삭제(안 제11조제1항제1호)
- 법령위임 없는 과태료 관련 조항 삭제(안 제45조, 별표 5)
 - 부정급수 제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30 포상금 지급 조항 삭제(안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준용 내용 삭제(안 제49조제1항 단서)
 - 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 조항에서 “과태료” 용어 삭제(안 제5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 「수도법」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수도법」 제87조(과태료)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 「수도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표준급수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 「표준급수조례」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나. 예산조치 : '16년도 예산 7,746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2. 10. ~ 12. 3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별지 제1호서식 성별 추가함)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7조 제목 “(요금 등의 감면)”을 “(요금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0조 중 “수수료, 과태료”를 “수수료”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하고, 별표 2와 별표 4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u>공업용수</u>”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p> <p>10. ~ 11. (생략)</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p> <p>① (생략)</p> <p>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p> <p>2. (생략)</p> <p>② <u>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 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u></p> <p>③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34조(가산금) 상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 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u>100분의 3</u>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후단 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0. ~ 11.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1. ----- ----- ----- -----<단서 삭제></p> <p>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제34조(가산금)----- ----- ----- -----100분의 2-----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p>

현행	개정안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사용자 :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면</p> <p>2.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 수도요금 100퍼센트 감면</p> <p>②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7조(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p> <p>⑥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43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30</p> <p>2.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p> <p>3.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p>	<p>제43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p> <p>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p>
<p>제45조(과태료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49조(이의신청) ① 상수도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p>	<p>제49조(이의신청) ①----- ----- ----- -----<단서 삭제></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0조(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u>수수료</u>, <u>과태료</u>,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제50조(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 --- -----<u>수수료</u>----- -----</p>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사용단계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 가(원)	현 행
가정용	1 ~ 20	700	530
	21 ~ 30	920	700
	31이상	1,210	920
일반용	1 ~ 30	800	665
	31 ~ 50	960	800
	51 ~ 100	1,120	930
	101 ~ 300	1,290	1,070
	301이상	1,450	1,200
산업용	1세제곱미터당	810	620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 (밀리미터)	금 액 (원)	현 행
13	890	750
20	2,490	2,110
25	4,000	3,390
32	7,110	6,040
40	12,000	10,190
50	18,390	15,630
75	44,600	37,910
100	76,050	64,640
150	165,700	140,840

[별표 7]

상수도요금 감면율(제37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정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급~3급)		
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00퍼센트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 사용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가정용	60퍼센트
	일반용	40퍼센트
	산업용	2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비고

1.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신 규
 상수도요금 { 해 지 } 감면 신청서
 지하누수

신청인	주소	거창군 읍·면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수도 수전 현황	주소	거창군 읍·면			
	수용가 번호		업종	구경	
감면 대상 자	성명		생년월일		
	관계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1~3급)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p> <p>거창군수 귀하</p>					
<p>※ 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 지하누수 :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p>※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화 승 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8
----------	----------

제출연월일	2016. 1. 0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변경하고, 요금 납부방법 개선 및 체납 시 가산요율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및 감면사항을 정함

- 하수도 사용료 31.3% 인상률 반영(안 별표 1)
-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제26조, 별표 7)

나. 규제 완화함

- 요금 등 납부방식 개선함(안 제16조의2)
 - 요금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식에 관한 명문 신설
- 요금 체납 가산요율 및 산정방식 개선함(안 제29조)
 - (현행) 체납액의 3%, 월할계산 ⇒ (변경) 2%, 일할계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2. 10. ~ 12. 3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61조제1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별표 1,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표는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p> <p>제26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제29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후단 신설></p>	<p>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제29조(가산금)----- ----- ----- ----- 100분의 2-----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p>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구분	사용량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 (원)	현행
가정용	1 ~ 20	<u>160</u>	<u>101</u>
	21 ~ 30	<u>220</u>	<u>136</u>
	31 이상	<u>300</u>	<u>182</u>
일반용	1 ~ 30	<u>160</u>	<u>120</u>
	31 ~ 50	<u>200</u>	<u>153</u>
	51 ~ 100	<u>250</u>	<u>186</u>
	101 ~ 300	<u>290</u>	<u>215</u>
	301 이상	<u>350</u>	<u>265</u>
산업용	1톤당	<u>160</u>	<u>120</u>

[별표 7]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6조제1항)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퍼센트
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비고

○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다.